



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심사기준1부)

제목 「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」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

1. 관련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0호(2021.2.1.시행)
2. 「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」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 - 아울러, 각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처방이 필요한 약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각 기관에서 직접 구비 및 처방할 것을 권유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보건복지부 고시(2021-30호)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1부. 끝.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대한약사회장, 대한간호협회장, 대한요양병원협회장



주무관 김원희 행정사무관 조호식 보험급여과장 이종규 전결 03/17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1550 2021.03.17. 접수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4층 보험급여과 / whk0710@korea.kr
여과
전화 044-202-2736 전송 044-202-3934 / whk0710@korea.kr / 공개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